

#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007-제1호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07. 1. 12.  
발의자 : 탁석주, 김유자,  
이정희, 최인환, 이문상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이 일부개정(법률 제19702호, 2006. 10. 17)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을 반영코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골자

가. 별표 2의 현지교통비(1일당) 10,000원 ⇒ 20,000원으로 인상함  
(안제7조제2항)

나. 별표3의 국가 및 시도별 등급에 따라 지급하던 국외여비를 단일화 함 (안제7조제3항)

## 4. 법적근거

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 제1항

## 5. 개정조례안 : 별첨

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“별지”

[별표 2]

국내여비의 지급범위(제7조제2항 관련)

(단위:원)

구 분	지 급 기 준 액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회의원	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

[별표 3]

국외여비의 지급범위(제7조제3항 관련)

(단위:미불화)

구 분	항공운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0야당)	식 비 (1일당)	준비금		
				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
의 장 부 의 장	1등정액	35	166	107	140	170	195
의 원	2등정액	30	145	81	130	155	180

《 현 행 》

[별표 2]

## 국내여비 지급기준표(제7조제2항)

(단위 : 원)

지급기준액 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 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<u>10,000</u>	46,000	25,000

- 비고 : 1.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이나 남해군 등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3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4.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에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,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,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
### 《개정안》

[별표 2]

## 국내여비의 지급범위(제7조제2항)

(단위:원)

지 급 기준액 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 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<u>20,000</u>	46,000	25,000

1. 사천시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 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### 《현 행》

[별표 3]

## 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7조제3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 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0야당)	식 비 (1일당)	준비금				
							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		
의 장 부의장	·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 ·등급구별이 없는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실비액	·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 ·등급구별이 없는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실비액	1등정액				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	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	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	140	170	195

※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“별표4”에 의거 지급

### 《개정안》

[별표 3]

## 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7조 제3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항공운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0야당)	식 비 (1일당)	준비금		
				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
의 장 부의장	1등정액	35	166	107	140	170	195
의 원	2등정액	30	145	81	130	155	180

# 관련법령 발췌

대통령령 제 19702 호

##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

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의 표중 시·도의회 의원과 시·군·구의회 의원 란의 현지교통비 (1일당) 란 “10,000”을 각각 “20,000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대통령령 제1932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항의 신설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